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시민단체 의견

이호택(피난처), 황필규(공감), 박영아(공감), 김종철(APIL)

제1장 총칙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u>우려</u>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갖는 국가(이하 “국적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u>우려</u>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u>우려</u>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u>합리적인 근거 있는 공포</u>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 또는 시민권을 갖는 국가(이하 “국적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u>공포</u>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그러한 <u>공포</u>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p>

*난민협약 영어본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는 표현은 “well founded fear of persecution”라고 되어 있어, 보통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라고 번역이 잘못 번역이 되고 있으나, 난민협약의 불어본(난민협약을 포함하는 조약을 규율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불어본과 영어본은 동일한 권위를 가지며, 위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약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을 하도록 하고 있음)의 표현은 “craignant avec raison”으로 직역하면 “합리적인 근거 있는 공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어본의 표현을 고려할 때 영어본의 well founded fear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라고 번역되기 보다는 “합리적인 근거 있는 공포”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함.

따라서 입증책임의 정도와 관련해서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는 식의 오해를 불러왔던 “충분한 근거 있는”이라는 표현을 “합리적인 근거 있는”이라고 옮기는 것이 타당함.

법률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난민신청자”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p> <p>나. <u>난민인정불허결정이나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아직 이의신청 제기기간이나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u></p> <p>다.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4. “난민신청자”란 외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무국적자로서 대한민국에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난민인정절차가 계속 중인 자</p> <p>나. <u>난민인정불허결정을 받고 아직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신청기각결정을 받고 아직 취소소송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자</u></p> <p>다. 난민인정불허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이거나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p>

*난민신청자는 행정절차 및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난민 지위의 여부가 더 이상의 불복 방법 없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며, 난민인정절차는 법무부 단계에서의 심사절차와 이의신청절차를 모두 포함하여, 이의신청 제기기간, 취소소송 제소기간, 항소 제기기간, 상고 제기기간에도 난민신청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명확히 함.

제2장 난민인정절차 등

	수정안
<p>제5조(난민인정의 신청) ㉔ 난민신청자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난민인정불허</p>	<p>제5조(난민인정의 신청) ㉔ 난민신청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p>

<p>후 이에 대한 행정쟁송이 제기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p>	
--	--

*난민신청자의 개념 정의가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함

법률안	수정안
<p>제6조(공항·항만 등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 ①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입국심사 전에도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u>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4주 이내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항·항만 또는 국경에 머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u>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4주 이내에 난민인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및 임시체류를 허가하여야 하고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u></p> <p>④ <u>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간 동안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⑤ <u>공항·항만 또는 국경에서의 난민인정절차는 본 조항의 시간적 및 장소적 제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른다.</u></p>	<p>제5조(난민인정의 신청) ⑤ <u>난민신청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u></p> <p>제6조 ② 내지 ⑤ 삭제</p>

*공항·항만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적인 관할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의 난민인정절차에 따라 난민인정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그것을 확인하는 제1항의 규정만 남기고 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난민협약 제31조에 따르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한 난민의 경우에도 그 입국의 방법을 문제 삼아 벌(행정벌, 형사벌 포함)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금과 같은 이동의 자유 제한 조치를 할 수 없으나, 단지 신원확인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만 이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신원확인을 위한 일정기간의 이동의 자유 제한은 제20조의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되므로 제6조 제3항과 같이 별도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음.

법률안
제9조(입증책임 및 입증정도)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난민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취지는 난민법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확립된 난민인정결정권자의 사실 확인 의무와 난민신청자에 대한 “유리한 해석에 의한 이익”(benefit of doubt)를 반영하고자 함.

제3장 난민위원회

제4장 난민 등의 처우

1절 난민의 처우	수정안 제1절 총칙
제36조(처우) ① 대한민국에서 난민의 인정을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인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에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처우를 보	제36조(처우) ① 난민 등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에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처우를 보

<p>·공포한 국제인권조약 등에 따른 처우를 보장 받는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난민</u>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법령의 개선, 관련 부처 혹은 부서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2절 난민의 처우</u></p>	<p>장받는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난민 등</u>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법령의 개선, 관련 부처 혹은 부서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	--

* 국제법의 적용과 정책의 수립은 난민뿐만 아니라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법률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p> <p>제47조(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 제27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u>제36조</u>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p> <p>제47조(인도적 지위를 부여받은 자의 처우) 제27조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의 처우에 관하여서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u>제37조</u>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p>

법률안	수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p> <p>제48조(생계비지원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생계비</u>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u>난민인정절차가 난민인정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종료하지 아니한 경</u></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p> <p>제48조(생계비지원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생계</u>를 지원하여야 한다.</p> <p>② 법무부장관은 <u>난민인정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u> 난민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49조(주거지원) ① <u>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심사가 종료할 때까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다만, 본 주거시설은 자유로운 입소와 퇴소가 보장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한다.</p> <p>② 주거시설의 종류·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하는 바에 따라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49조(주거지원) ① <u>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다만, 본 주거시설은 자유로운 입소와 퇴소가 보장되는 주거시설이어야 한다.</p> <p>② 주거시설의 종류·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현물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난민신청자의 개념 정의가 반복되는 부분 생략함.

부 칙

법률안	수정안
<p><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제1조(시행일)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4조 제1항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u>다.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u></p> <p>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의 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따라”를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p> <p>③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제14조 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 2에 따라”를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 등”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으로 한다.

제2조 제4호 중 “난민여행증명서”를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제**조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이하 “난민여행증명서”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2, 제62조 제4항, 제64조 제3항, 제76조의 2부터 제76조의 10까지의 규정, 제78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0호 및 97조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⑤ 「행정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9호 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를 “외국인의 출입국·귀화”로 한다.